

2019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35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 합격자 공고

2019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35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

[일반행정 : 98명]

51000033	51000499	51000822	51001253	51001758
51000065	51000500	51000832	51001265	51001773
51000083	51000512	51000834	51001290	51001780
51000103	51000516	51000836	51001352	51001784
51000131	51000521	51000838	51001378	51001812
51000156	51000523	51000849	51001418	51001850
51000188	51000548	51000900	51001450	51001921
51000189	51000552	51000927	51001465	51001924
51000193	51000555	51000931	51001525	51001926
51000209	51000588	51000932	51001554	51001931
51000231	51000606	51000946	51001575	51001940
51000237	51000610	51000960	51001617	51001956
51000274	51000635	51000980	51001618	51002017
51000293	51000667	51000990	51001655	51002020
51000381	51000689	51001028	51001673	51002025
51000390	51000691	51001061	51001691	51002027
51000392	51000694	51001130	51001692	51002028
51000395	51000697	51001178	51001696	51002048
51000440	51000744	51001182	51001705	
51000498	51000767	51001243	51001723	

[법 제 : 47명]

52000015	52000168	52000241	52000373	52000484
52000031	52000174	52000244	52000379	52000500
52000033	52000179	52000245	52000412	52000517
52000043	52000184	52000278	52000420	52000520
52000067	52000188	52000282	52000435	52000530
52000086	52000201	52000293	52000458	52000543
52000091	52000206	52000327	52000464	52000561
52000124	52000212	52000334	52000468	
52000126	52000215	52000351	52000473	
52000152	52000226	52000353	52000478	

[재 경 : 102명]

53000020	53000180	53000381	53000490	53000689
53000028	53000208	53000386	53000492	53000690
53000035	53000220	53000394	53000502	53000708
53000041	53000221	53000396	53000526	53000718
53000053	53000259	53000400	53000531	53000720
53000066	53000263	53000404	53000533	53000723
53000086	53000268	53000405	53000557	53000732
53000087	53000269	53000408	53000562	53000741
53000109	53000278	53000416	53000584	53000744
53000116	53000293	53000430	53000612	53000747
53000117	53000298	53000433	53000613	53000748
53000127	53000307	53000440	53000617	53000762
53000130	53000319	53000448	53000618	53000763
53000144	53000328	53000455	53000625	53000778
53000147	53000335	53000456	53000626	53000790
53000150	53000336	53000458	53000627	53000792
53000156	53000352	53000461	53000629	53000801
53000159	53000359	53000465	53000632	53000802
53000163	53000369	53000470	53000640	
53000174	53000374	53000482	53000656	
53000176	53000380	53000488	53000679	

[사 서 : 7명]

54000003	54000012	54000025	54000041
54000007	54000017	54000031	

2. 합격선(cut-line)

구 분	일반행정	법제	재경	사서
합격선	80.83	70.00	80.00	61.67
지방인재 추가합격선	78.33	해당 없음	77.50	해당 없음

3. 제1차시험 성적조회

가. 기 간 : 4. 15.(월) 09:30부터 1년간 조회가능

나. 방 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우측 메뉴 중 '성적조회' 클릭

4. 제1차시험 답안지 열람 안내

제1차시험 답안지 열람을 원할 경우 4. 19.(금)까지 전화(02-788-2081)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 한해 답안지 열람일자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제2차시험 일자 : 5. 22.(수) ~ 5. 24.(금), 3일간(예정)

※ 제2차시험의 최종확정 일정에 관한 시간 및 장소 공고는 국회채용시스템의 [시험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지방인재 증빙서류 제출 안내

가. 서류제출 대상

- 일반행정 및 재경직류 합격자 중 응시원서 접수 시 지방인재로 표기한 전원

※ 제2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 지방인재임을 입증해야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없음

나. 서류제출 방법 : 4. 19.(금)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부(제출마감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

※ 제출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11호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
(우편번호 07233)

※ 문의처 :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

다. 제출서류

① 지방인재 응시자 학력기술서 1부(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② 학력증명서류 1부(학력기술서에 기재한 학력 중 해당 유형별로 다음의 자료 제출)

ㄱ. 취학의무 면제 등의 사유로 학력이 없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ㄴ. 최종학력이 지방 소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중인 사람

- 최종학력 증빙서류(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중퇴자는 제적(除籍)증명서, 재학·휴학중인 사람은 재학증명서)

※ 출신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의 교육행정기관(초·중·고교, 교육청)을 방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http://www.neis.go.kr>)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발급방법 : www.neis.go.kr → Home-edu 민원서비스 → 온라인 발급/신청)

ㄷ. 지방대학 졸업(예정)자

- 지방대학 졸업(예정)증명서

ㄹ. 지방대학 중퇴·재학·휴학자

- 중퇴자의 경우 제적(除籍)증명서 : 제적(除籍)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재적기간이 표기된 재적(在籍)증명서
- 재학·휴학자의 경우 재적(在籍)증명서 : 재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 지방인재 여부 판단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9. 2. 14.)을 기준으로 함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연락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하거나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했음에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고, 증빙서류에 학력사항 등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합격결정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7.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과 관련하여 기준점수 이상 취득 여부를 해당 기관에 확인함에 따라 영어성적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유효기간(2년) 경과 등으로 인하여 취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후

영어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 미제출 시에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